

행복한 동행!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는 직장인 등도 편리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일과 후, 주말 등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개최 안내(일시, 장소, 회의 안건, 참관 등)와 회의결과는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유치원 운영 또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학부모님들이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법(위원 메일 공개 등)을 학부모님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유치원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치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단위유치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선출된 제9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임기가 2022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10기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2022년 3월 중에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예정입니다.

우리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이 되면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은 물론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10기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학부모위원 선출 관련 세부 일정 등은 추후 가정통신문 및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유치원으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 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위원 선출 관련 안내문 1부. 끝.

2022년 3월 2일

튼튼유치원장

새롭게 바뀌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모든 학부모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여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위 유치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며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

- ◆ 단위유치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 유치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유치원 공동체입니다.
-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우리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 ◆ 위원의 정수: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3명 계 8명
- ◆ 위원의 임기: 1년(2022. 4. 1.~2023. 3. 31.)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 보궐 선거인 경우 잔여 임기에 한 함

☞ 우리유치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 선출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2022. 3. 21.까지
-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유치원장이 위촉한다.

☞ 위원의 자격

- ◆ 학부모위원: 해당 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결격사유 조회 정보 동의 필요)
- ◆ 교원위원: 해당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과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유치원 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자문·자문권, 보고 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무보수 봉사직임)